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3112호
- 나. 발 의 자 : 최영주 의원(찬성자 12명)
- 다. 발의일자 : 2022년 3월 10일
- 라. 회부일자 : 2022년 3월 16일

2. 제안이유

- 「예술인 복지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예술인 지위와 권리 보호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신설하고,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축제 주최자와 참여 예술인간의 ‘문화예술용역’에 대한 계약체결시 고용보험료 납부, 계약의 공정성 확보 등 축제 참여 예술인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 노력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또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조항 정비를 통해 조례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시장의 책무에 “축제 참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호” 조항 신설(안 제3조제2항).
- 나. 위원회 구성 및 임기 조항 정비(안 제7조제1항~제7조제3항, 제9조제1항).
- 다. 실무위원회 소집에 관한 사항 조문 정비(안 제12조제5항).
- 라. 축제 개최를 위한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을 규정함(안 제17조).

4.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주우철)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예술인 지위와 권리 보호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신설하고, 축제 개최 시 축제 주최자와 참여 예술인과의 계약의 불공정성을 방지하는 등 예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제출되었음.

나. 개정의 필요성

- 2009년 제정된 「예술인 복지법」은 예술인의 권리보장에 기여해오고 있으나 예술인들은 예술계에서 여전히 구두상 계약과 불공정 계약조건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단속적(斷續的) 용역계약을 기반으로 소득을 얻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임.

- 이에 개정안은 축제에 참여하는 예술인들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입법적 타당성이 있음.

다. 주요내용

1) 시장의 책무 신설(안 제3조제2항)

- 개정안은 「예술인 복지법」 제4조에 따라 축제에 참여하는 예술인의 지위 향상과 복지증진의 책무를 부여하고 있어 관련 입법 취지에 부합됨.

2) 축제위원회의 구성(안 제7조부터 안 제9조)

- 안 제7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축제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으로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를 포함하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도록 규정한 사항임.

<축제 위원회 구성 현황>

구분	현행	개정안
당연직	문화본부장, 관광체육국장	문화본부장, 관광체육국장, <u>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u>
위촉직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 2명 · <u>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u> ·서울연구원 소속 축제분야 연구원 ·축제감독 ·대학교수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 2명 ·서울연구원 소속 축제분야 연구원 ·축제감독 ·대학교수

3) 실무위원회(안 제12조)

- 안 제12조는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명시된 실무위원회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 현 상황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문화본부에서 제출한 실무위원회의 개최 현황을 살펴보면, 동 조례가 2020년 3월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단 세 차례 회의가 열렸음.
- 실무위원회는 축제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사전 검토, 축제정책의 세부실행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로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에도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 운영을 권고하고 있음.

4) 축제 개최 용역 계약(안 제17조)

- 안 제17조는 축제 개최를 위하여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체결 시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고, 축제 주최자에게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과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에 대해 의무를 부과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3년마다 실시하는 예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용역 계약시 표준계약서의 사용률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예술인들은 용역사로부터 불공정한 계약조건이나 계약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받는 일이 빈번하다고 하는 바, 이는 조례 개정을 통해 표준계약서의 명문화와 예술계의 관행상 이루어지던 계약 외의 노동 등 불공정행위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안 제7조제2항에서 축제 주최자가 예술인에게 고용보험을 가입하도록 한 사항과 관련하여 2020년 12월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예술인들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다른 사회보험보다 가입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일반적으로 사업주와 예술인은 구두로 계약을 맺으며, 단기계약일 경우 고용보험 가입은 별도로 예술인이 사업주에게 요청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반해 조례 개정을 통해 축제 주최자가 고용에 있어 신고를 하고 보험료 납부를 하게 된다면 예술인고용보험 제도가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개정안은 「대한민국헌법」¹⁾상 보장된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의 견지에서 형사법 상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 행위인 성희롱·성폭력으로 부터 예술인을 보호하는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 2018년 문화예술계의 성희롱·성폭력 사건²⁾으로부터 문화예술계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예술인 복지법」 제4조제3항을 신설하였으나 여전히 문화예술계 내 성폭력 사건은 해결되기는커녕 공론화조차 어려운

1)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2) 2018년 1월 서지현 검사의 검찰발 미투를 시작으로 고은, 이윤택, 김기덕, 조재현, 故 조민기 등 유명 남성 예술인들이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되며 파장을 낳은 사건

현실이므로³⁾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호를 위해 축제주최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것은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는 측면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3) 최현지 기자, '미투 3년... 문화예술계 내 성폭력, 아직도 말 꺼내기 어려워', 여성신문, 2021.1.29.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835>

의안번호
3112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제 안 자	제안일자	소관 상임위
	최영주 의원 (문화체육관광위, 강남3)	2022.3.1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인 복지법』의 취지에 따라 축제에 참여하는 예술인에게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술인 지위와 권리보호 의무’ 명문화를 통한 시의 책임 강화(안 제3조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개최를 위한 문화예술용역 계약 체결 시 서면계약 체결 의무화 및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행위 금지(안 제17조제1항) - 성희롱, 성폭력으로부터 축제참여 예술인 보호 (안 제17조제3항) ○ '20.12.10부터 의무 적용하도록 한 예술인 고용보험을 축제 주최자 및 문화 예술기획자 등의 의무로 명시하여 축제 개최자의 책임 제고(안 제17조제2항) ○ 서울시 축제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안 제7조 제1항~제3항 및 제9조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위원장 2명(서울시 행정1부시장 및 위촉직 중 호선한 위원장)을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으로 개선 - 기존 공무원 2인(문화본부장, 관광체육국장)으로 구성된 당연직 위원에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추가 및 재임하는 기간을 임기로 규정 -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축제위원회 위원장이 겸임하도록 하고, 매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규정한 내용을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수시로 소집하도록 하여 효율성 제고 		
추진경과	○ '20.12.10 : 예술인 고용보험 의무 적용		
부 서 검토의견	원안가결(○) / 수정가결 () / 부결() / 보류()		
쟁점사항 (의회동향, 문제점 등)	○ 해당사항 없음		
대응방안	○ 해당사항 없음		
상 임 위 처리결과	○		
향 후 계 획	○		
담당부서	문화예술과	팀장 정성욱(☎2133-2569)	담당 유승운(☎2133-2570)